

접 수	의안과 - (2015. . .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선거후보자의 공약을 검증하는 기구 설립 및 상  
시 운영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 의견서 3부
- 2. 청 원 서 3부. 끝.

2015년 1월 27일

청 원 인

성 명 : 안 정 헌

주 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소 개 의 원 : (인) 외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성명 : 안정현
건명	선거후보자의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광역자치단체장과 대통령의 공약 실행여부에 관한 위원회 설치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소개년월일	2015년 1월 27일
<p><b>소개의견</b></p> <p>청원인 안정현 외 8명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정치법제위원회 소속 위원입니다. 제12회 정기회의 발의하고자하는 안건은&lt;선거후보자의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광역자치단체장과 대통령의 공약 실행여부에 관한 위원회 설치 및 처벌에 관한 법률&gt;입니다.</p> <p>현재 대한민국 공약에 대한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선거 후보자들이 실현가능성이 없는 공약을 내세우며 표심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공약에 속아 투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한 선거문화와 공정한 정치를 위해서 후보자의 공약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또 영향력 있는 준사법적인 기구를 설립하는 법안을 발의합니다.</p> <p>최근 어느 지역 광역자치단체장의 공약의 이행을 현저히 떨어져 그 지역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처벌이 더 강화 된다면 다음 선거를 거치면서 더욱 발전하는 선거 문화를 기대하는바입니다.</p> <p>청소년 의회에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p> <p>다음과 같은 법안을 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p> <p><b>제 1조 (목적)</b> 이 법은 민주 사회의 정의와 신뢰를 높이고 선거 문화의 선진화를 위하여 국민들을 대신하여 광역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율 및 입후보자의 공약 현실성을 알게 하고 처벌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p> <p><b>제 2조 (기능)</b>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기구로 공약실천위원회를 신설하고 광역 자치단체장 및 대통령의 입후보자의 공약의 현실성을 심사하고 당선자의 공약 이행 정도를 심사한다.</p> <p><b>제 3조 (권한)</b> 공약실천위원회는 입후보 기간 1달 전 1회 소집되며 준사법적 기관으로써 처벌의 권한을 가진다.</p> <p><b>제 4조 (적용범위)</b> 이 법은 대통령선거·광역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p> <p><b>제 5조 (국민의 권리)</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은 국민의 알 권리에 기초하여 각 광역자치단체장과 대통령의 공약 이행정도 및 공약의 실현성 여부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li> <li>2. 대한민국 국민 중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정책 학위 보유자는 공약실천위원회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li> </ol> <p><b>제 2장 처벌 기준</b></p> <p><b>제 4조 (처벌 기준)</b></p>	

- 1항 현 광역자치단체장이나 대통령의 공약의 진행정도를 파악하여 전체의 공약 이행정도는 %를 기준으로 계산하되 계산 결과의 소수점 결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 2항 공약의 80%이상은 책임을 묻지 않고 80% 미만으로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3항 단 각각의 공약 진행 정도가 70%가 넘을시 공약을 실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 4항 공약의 진행 정도와 처벌정도는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결정한다.
- 제 5조 입 후보자의 공약의 제한에 대한 법률
- 1항 입후보자의 공약과 관련 자료를 입후보 기간 1주일 전에 제출한다.
- 2항 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결된 공약은 후보자의 공식적인 공약으로써 기재 및 유세 하지 못한다.

소 개 의 원

인

## 청원서

### 1. 제안이유

선거철이 되면 많은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후보자들은 공약을 내세웁니다. 유권자들은 대부분 후보자들의 공약을 보고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공약이 실현가능성이 없고,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해서 거짓으로 공약을 내세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당선된 우근민 제주 지사가 공약으로 내세운 ‘제주 거점의 국내 및 국제조선 확대’, ‘동남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실내스키돔 조성’ 등을 내세웠지만 공약의 세부 과제에 운영 및 추진 실적이 없어 0점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성 없는 법안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보아 공약을 확인하고 투표를 진행했던 유권자들이 그 후보에게 투표한 의미가 무색해질 것입니다. 올바른 선거 문화와 책임감 있는 정치 활동을 위해서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하여 실현가능성을 사전검증 강화를 위한 준사법적인 상설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실제로 이정호 기자의 “4년 전 지방선거 핵심공약……. “에 따르면 17개 광역단체에서 당선 전 선거 공약과 당선 후 공약이 일치한 비율은 평균 75.71%에 불과 했고 광역단체 홈페이지에 공약 변경 사항을 찾아보기도 힘든 경우도 다수였습니다. 또한, 공약변경 사항을 찾아보기 쉽게 표시한 지자체는 서울, 광주, 대구에 불과 했습니다. 이를 보아 선거 당시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는 경우가 적고 그로 인해 광역자치단체장과 대통령의 책임감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현 대통령이 공약으로 한 미 작전 통제권을 정상적으로 환수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미국에게 작전 통제권 환수를 연기 요청했고 이를 통해서 공약을 시행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책임감을 받지 못했고 책임감을 후보자 및 당선자에게 부여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의합니다.

### 2. 주요골자

현행 법 상으로는 공약에 불이행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선거후보자의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광역자치단체장과 대통령의 공약 실행여부에 관한 위원회 설치 및 처벌에 관한 법률’로 준사법적 기관으로 처벌이 가능한 공약실천위원회를 신설한다. 기관에서 대통령과 광역자치단체장의 공약의 적절성과 부적절성을 심사하여 선거 전 부적절한 공약을 공식적인 공약과 유세로써 사용할 수 없고, 공약의 시행정도를 %로 계산하여 적절한 %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처벌한다.

청원인 성명 : 안정현

청원인 주소 :

청원인 전화번호 :

현행	개정문
<p>현행 없음.</p>	<p>제 1조 (목적)  이 법은 민주 사회의 정의와 신뢰를 높이고 선거 문화의 선진화를 위하여 국민들을 대신하여 광역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을 및 입후보자의 공약 현실성을 알게 하고 처벌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p> <p>제 2조 (기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기구로 공약실천위원회를 신설하고 광역 자치단체장 및 대통령의 입후보자의 공약의 현실성을 심사하고 당선자의 공약 이행 정도를 심사한다.</p> <p>제 3조 (권한)  공약실천위원회는 입후보 기간 1달 전 1회 소집되며 준사법적 기관으로써 처벌의 권한을 가진다.</p> <p>제 4조 (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광역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p> <p>제 5조 (국민의 권리)  1. 국민은 국민의 알 권리에 기초하여 각 광역자치단체장과 대통령의 공약 이행정도 및 공약의 실현성 여부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2. 대한민국 국민 중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정책 학위 보유자는 공약실천위원회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p> <p>제 6조 (처벌 기준)  1항 현 광역자치단체장이나 대통령의 공약의 진행정도를 파악하여 전체의 공약 이행정도는 %를 기준으로 계산하되 계산 결과의 소수점 결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2항 공약의 80%이상은 책임을 묻지 않고 80% 미만으로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3항 단 각각의 공약 진행 정도가 70%가 넘을시 공약을 실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4항 공약의 진행 정도와 처벌정도는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결정한다.</p> <p>제 7조 입 후보자의 공약의 제한에 대한 법률  1항 입후보자의 공약과 관련 자료를 입후보 기간 1주일 전에 제출한다.  2항 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결된 공약은 후보자의 공식적인 공약으로써 기재 및 유세 하지 못한다.</p>